

14:00~14:20 학술정보원 6층 세미나실

**WTO-DDA 협상회의(비농산물시장접근)
참석 귀국보고**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목 차

| | |
|------------------------------|----|
| I . 표지 | 8 |
| II .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 8 |
| III . 주요협상동향 | 9 |
| IV . 주요국제안 관세인하공식 | 10 |
| V .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 13 |
| VI . 기타관세문제 | 14 |
| VII . 비관세장벽 | 15 |
| VIII . S&D(개도국특례) | 15 |
| IX . 환경상품 | 16 |
| X . 평가 및 전망 | 16 |



WTO - 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2003. 6. 27.

발표자 : 박 명 선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1. 도하각료선언 16항 및 31항의 mandate에 따라 2002 초 협상개시

- 1) 모든 비농산물(without a priori exclusions)
- 2)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또는 철폐
- 3) 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의 해소
- 4)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 5)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2. 주요작업일정

- 1) 2002년도는 절차문제로 상반기 작업지연, 하반기에 4차례 회의 개최
- 2) 2003년도 2차례(2월, 4월) 회의 개최, 앞으로 상반기 동안 (5월, 7월, 8월) 회의 개최 예정
- 3) 2003.5.31까지 협상 modalities 합의 예정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 주요협상동향

1. 협상목표 및 방식

- 1) UR협상결과(평균관세 33%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 2) 양허품목 확대
 - ① 양허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 ② 일부국가는 신규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면제 또는 인하폭 차등화 주장
- 3) 공식적용방식(formula approach) + α (R/O방식, 분야별 접근방식)에 대체로 공감대 형성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 주요 협상 동향

2. 관세인하방식

1) 제안서 제출 동향

① 지금까지 31개 제안서 제출

② 구체적인 관세인하공식을 제안한 국가

☞ EC,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등 수개국에 불과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1. EC : 관세압축 (tariff compression)

1) 관세를 보다 완만한 범위 (flatter range) 내로 수렴

2) 4개 대역 설정 (최고세율 15%)

① 0% ~ 2% → 0%

② 2% ~ 15% → 1.6% ~ 7.5%

③ 15% ~ 50% → 7.5% ~ 15%

④ 50% 이상 → 15%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2. 미국 : 전품목 2015년까지 2단계 무세화

- 1) 2010년까지 5% 이하 관세 철폐, 나머지는 모두 8% 이하로 감축 (스위스공식 적용)
- 2) 2015년까지 균등감축을 통한 무세화

3. 일본 :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 공식

- 1) 평균관세율 기준 4개 국가그룹별로 상이한 목표감축률 설정
- 2)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4. 중국 : 스위스 공식과 유사한 새로운 공식

- 1)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 증대, 개도국 관세 대폭인하 효과☞ 단, 평균관세율 수준에 따라 상이한 감축률 적용, 개도국 입장 고려
- 2) 최종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은 중국입장 반영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5. 인도 : 단순선형감축 (simple percentage cut)

- 1)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폭의 2/3(67%)만큼만 감축
- 2) 단순선형감축 후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인 모든 관세는 평균관세의 3배까지 감축 (개도국은 예외)
- 3) 개도국은 양허항목 중 15%까지 감축률 조정 가능
- 4) 미양허품목은 가장 높은 양허세율 혹은 기준날짜의 실행 세율 수준으로 양허하되, 개도국은 미양허품목 중 10%는 미양허 유지 가능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6. 한국

- 1) 무역가중평균 40% 감축

- ①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 ② 단,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최소감축률 20% 적용

- 2) 관세정점 및 고관세 장벽 제거

- ☞ 국내평균관세의 2배, 혹은 25%를 초과하는 고관세는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II.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T1 = (T0 \times 0.8) - 0.7 \times (T0 - 2 \times Ta)$$

$$T1 = (T0 \times 0.8) - 0.7 \times (T0 - 25)$$

T0 : 감축 이전 관세율

T1 : 감축 후 최고세율

Ta : 국내평균양허세율

❖ 관세정점, 고관세에 관한 일반적 정의

ⓐ 국내기준 : 국내 평균관세의 3배

ⓑ 국제기준 : 관세율 15% 이상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V.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1. 대부분 UR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

1) 일부 국가는 실행세율 적용 주장

① 미국 : 2000년 실행세율과 UR최종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

② 싱가폴 : 실행세율

③ 중국 : 선진국은 실행세율, 개도국은 실행세율과 UR최종 양허세율의 평균

2) 미양허품목의 기준세율 : 대부분이 기준년도의 실행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

① 태국 : 법정세율 (national statutory rate) 제안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V.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3) 우리 입장

- ① 양허품목은 UR최종양허세율, 미양허품목은 2001년 도하협상 출범당시 실행세율

2. 이행기간은 대부분 5년 제안

- 1) 개도국 이행기간 연장에는 대부분 신축적 입장 시사
- 2) 우리는 개도국 이행기간으로 7년 제안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V. 기타관세문제

1. 미소관세

- 1) 철폐 : EC, 미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선진국
- 2) 유지 : 브라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 ☞ 우리는 3% 이하를 미소관세로 간주, 이에 대해 철폐를 동의하나, 공식적용방식에 합의한 후에 이 문제를 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임.
- 3) 비종가세
- 4) 무세화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VI. 비관세장벽 (NTB)

1. 의장의 Overview Paper를 중심으로 4월 회의시 논의 예정이며 현재까지 미국, EC, 일본,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비관세장벽 관련 별도 제안서를 제출
2. NTB 논의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함.
3. NTB 협상방식 제안
4. 2003.1.31까지 각국의 NTB 현황 WTO 사무국 통보 예정 이었으나, 현재 18개국이 통보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VII. S&D (개도국 특례)

1.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에 기초한 개도국 우대원칙에 대부분 동의
 - 1) 개도국 수출상품, 개발수준 고려
 - 2) 감축이행기간 및 관세감축수준 차등화
 - 3)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조치 등
2. 구체적인 S&D 조치의 내용관련 제안은 별무 상태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VIII. 환경상품

1.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입장 대립

- 1) EC 등 일부 선진국 : 생산과정을 기초로 한 환경친화적 상품 포함
- 2) 개도국 : 최종용도(end-use)에 기초한 접근방식 지지, 생산과정을 기초로 환경상품 범위 확대 반대
- 3) 미국 등 다수 선진국과 우리는 개도국 입장 지지

2. 각국 제시 환경상품 목록을 기초로 논의 예정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IX. 평가 및 전망

1. 작업일정에 대한 논란으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
2. 최근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과 인도, 중국, 개도국 공동체 안서 등 주요국 제안서 제출로 협상 본격화
3.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에 난항 예상
 - 1) 2003.5월 말 시한내 협상 modalities 확정 여부 불투명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표)시장접근 협상의 주요 이슈별 주요국 입장

| | 한국 | 중국 | EU | 미국 | 일본 | 인도 |
|----------------------------|-------------------|--|------------|----------------------------------|-----------------------------|--------------------------------------|
| 품목별 감축률의 조정 가능 여부 | 조정 가능 (매우 제한적) | 조정불가 | 조정불가 | 조정불가 | 조정 가능 (무세화품목 외 모든 품목) | 선진국 불가, 개도국은 조정 가능 (15%) |
| 기준세율 | 최종년도 양허세율 | 선진국은 실행세율/ 개도국은 실행과 양허의 평균 | 현행 양허세율 | 최종양허 세율과 실행세율 중 낮은 것 | 양허세율 | 최종년도 양허세율 |
| 양허범위 확 대 | - | | 100% 양허 | 100% 양허 | 양허 확대 | 개도국은 10% 미양허 유지 가능 |
| 미소관세 | - | 선진국만 제거 | 제거 | 제거 (5%이하) | - | 반대 |
| 무세화 | - | 확대 | 확대 | 확대 | 확대 | 최소화 |

WTO-DDA 비농산물 협상회의 참석보고

(표)시장접근 협상의 주요 이슈별 주요국 입장

| | 한국 | 중국 | EU | 미국 | 일본 | 인도 |
|----------------------|---------------|---|----------------------------------|----------------------------------|--------------------|-----------------------------------|
| 수출관세의 NTB 포함여부 | - | - | 찬성 | - | 찬성 | 반대 |
| 이행기간 | 5년 개도국은 7년 | 기본 5년 개도국은 연장 /이행기간에 따른 변수(B) 의 차등화 |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장기의 이행 기간 부여 | 5년/10년 개도국에 대한 연장 조치 없음 | 5년 개도국은 연장 |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장기의 이행 기간에 부여 |
| 관세인하방 식 | 공식인하 | 공식인하 | 공식인하 | 무관세화 | 무관세 + 목표감축 | 공식인하 |
| 첨두관세 제거효과 | 높음 | 높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높음 |
| 고관세 제거효과 |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무세화 분야에서는 높음 | 낮음 |